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요건 완화〉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9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요건 완화	3
2.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 완화	8
※ 참고자료	12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12
2. 명문장수기업 정책적 우대사항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05. 13.
3. 회부연월일 : 2025. 0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기술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인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유흥 주점업(룸살롱 등接客요원을 둔 유흥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경마 베팅시설 등),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 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Ⅲ. 검토의견

1.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요건 완화(안 제62조의4)

현행	개정안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u>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 ----- <u>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를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정하면서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제한 업종에서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하 ‘건설업 등’)'을 제외하면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를 대상으로 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이하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도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심의위

원회를 거쳐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해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 및 확인하는 제도임¹⁾²⁾.

명문장수기업 확인³⁾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확인기업 홍보 등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3)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업력 요건, 장기 고용·매출액·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도 요건, 법규준수 및 보건·안전 프로그램 시행 등 사회적 기여도 요건, 기업의 브랜드 가치·보유 특허의 수준·제품의 우수성 등 기업 역량 요건,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등 기업혁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술개발 및 정책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기업들보다 우대⁴⁾하고 있음.

참고로, 2024년 12월말 기준 총 53개사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⁵⁾되었음.

[표 1] 명문장수기업 신청기업 및 선정(승인)기업수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기업	50개사	68개사	87개사	71개사	100개사	90개사	49개사	82개사
확인기업 (누계)	6개사 (6개사)	4개사 (10개사)	4개사 (14개사)	5개사 (19개사)	11개사 (30개사)	7개사 (37개사)	6개사 (43개사)	10개사 (53개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5년 동 제도 도입 당시, 명문장수기업 요건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그리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등이 중요하다는 국회 논의에 따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전통적인 뿌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토대가 되어왔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동 제도가 도입·시행되어 옴⁶⁾.

그런데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기존 업종간의 경계가 약해지고

4)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시 정책적 우대사항은 [참고자료 2] 참조

5) 2025년에는 11월 중에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임.

6) 제332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5.4.20) 회의록 발췌

홍영표위원장: 우리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제조업 등 뿌리산업을 꾸준히 해 온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홍익표위원: 과거 전통적으로 생산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국민경제에 기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가능성은 남겨둘 필요가 있음.

신기술 관련 산업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업종 영위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비취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 제도에 참여⁸⁾할 수 있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 확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다른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서도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금융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건의자료, 2022. 8, pp.13~15.

8) 개정안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되는 업력 45년 이상 기업 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11,991개에서 16,743개로 4,752개(3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중소벤처기업 지원 법령 제외업종 개정현황

법령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개정일자)	부동산업 삭제 (‘21.6.8.) * 건설업, 금융업 제외이력 없음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삭제 (‘18.12.11.) * 건설업 지원대상 포함 (’93.8.4.~)	부동산업 삭제 (‘18.5.29.) * 건설업, 금융업 제외이력 없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이러한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규정은 명문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된 것⁹⁾으로,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을 완화할지에 대하여는 동 제도 도입 당시의 입법 취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또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이 확대되는 경우 명문장수기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업력과 경제적·사회적 기여 등 기존의 선정요건에 따라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¹⁰⁾

9) 제332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5.4.20) 회의록 발췌

백재현위원: 업력요건을 충족한 기업명단을 보면 건설회사가 있는데, 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특허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얻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함.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범위를 완성도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진복위원: 건설회사는 업력기준만 충족한 것일 뿐, 심사하면 다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
장윤석위원: 우리가 명문장수기업 하면 연상되는 것은 건설업은 아닌 것 같음. 건설업, 부동산업은 근본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송대호 전문위원: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 관한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제62조의4,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0)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제한 완화 시 산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을 신규 적용하여 평가에 활용하는 계획을 밝힘.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4제1호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제4항11)에서는 주된 업종의 변동을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별하도록 하되,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된 업종의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¹²⁾.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사업 다각화와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각 사업의 매출에 변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 개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2) 현행법에 따르면, ‘세분류’ 상 주된 업종이 변경된 기업의 경우 예외없이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

안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¹³⁾¹⁴⁾

또한,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2024.2.29. 공포)으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이 기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금지’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 금지’로 완화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된 업종이 변경되어도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경우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행 명문장수기업 제도에서 업종유지 요건을 도입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업종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심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¹⁵⁾, 백년소상공인의 요건¹⁶⁾을 규

13)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유지 요건을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대통령령의 규정도 기업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건의자료, 2022. 8, pp.13~15.).

14) 중소기업중앙회는 주된 업종 변경으로 명문장수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1973년부터 플라스틱 욕실자재를 제조하고 있는 A업체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양변기 제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액이 기존 사업의 매출액을 초과할 경우 주업종이 다른 중분류로 변경되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이 불가능해짐.

1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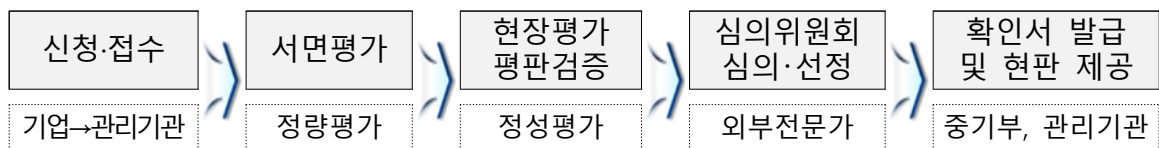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개념)**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 **(기본요건)**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
 - *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봄
- **(확인요건)** 필수지표*를 만족하고,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 ① 최근 5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②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③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 판결 이력이 없을 것
- **(선정현황)** '17년부터 '24년까지 총 53개사 선정(중소38, 중견15)
 - * 총 53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24) 10

□ 확인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우대내용

- **(자긍심 고취 등)**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현판 제공, 언론·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등
- **(지원사업 참여우대)** 정책자금, 지역특화사업,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2】 명문장수기업 정책적 우대사항

분야	사업명	우대사항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1점
기술보 호	중소기업기술거래활성화지원사업	가점 1점
지역 특화 산업	지역주력산업 비R&D	가점 2점
	시군구연고산업	가점 2점
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가점 1점
수출	온라인수출플랫폼	가점 2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가점 2점
	수출 바우처	가점 1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가점 1점
	수출 컨소시엄 사업	가점 1점
판로	중기간경쟁입찰참여시, 신인도	가점 2점
자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2025. 4, p. 8.